

의안번호	2214483
의 퇴 인	신장식의원
회 답 일	2025.2.24.
추계번호	25B6375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경찰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가입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1항) 1. 경찰공무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의무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제2항)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의무규정
3	안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경찰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공무원 복무 관계 법령에 따라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봄(제2항)	의무규정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근무시간 면제자 등)	경찰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9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둠(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경찰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제4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9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제1항)	의무규정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7	안 제10조(교섭의 절차)	노동조합은 제9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9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항)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함(제4항)	재량·의무 규정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8	안 제11조(단체협약의 효력)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12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됨.	의무규정
10	안 제13조(노동쟁의의 조정 신청 등)	제9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함(제3항)	의무규정
11	안 제14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함 1. 제9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12	안 제15조(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함.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함(제3항)	의무규정
13	안 제16조(회의의 운영)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전원회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함(제2항)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의무규정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함(제3항)	의무규정
14	안 제17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됨(제2항)	의무규정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제3항)	의무규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제4항)	의무규정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짐(제5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	• 미대상 －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5조(가입범위)		
3	안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은 그 기간 중 공무원 복무 관계 법령에 따라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전임자와 관련한 대체인력의 채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 및 채용 형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 규모, 채용 형태, 임금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7조(근무시간 면제자 등)	×	• 미첨부(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근무시간 면제자와 관련한 대체인력의 채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 및 채용 형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 규모, 채용 형태, 임금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	• 미대상(제3항) - 제정안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8조(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	• 미대상 - 제정안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는 현재 행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9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면서(안 제9조)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고(안 제10조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안 제10조제2항) 내용 등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10조(교섭의 절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8	안 제11조(단체협약의 효력)	—	• 미대상 — 제정안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부교섭대표로 하여금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명시적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9	안 제12조(쟁의행위의 금지)	—	• 미대상 — 제정안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해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안 제13조(노동쟁의의 조정 신청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의 시행으로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은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서 소관하며,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안 제15조과 제16조에서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함
11	안 제14조(중재의 개시)	—	• 미대상 — 제정안은 중앙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등에 중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중재의 개시는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서 소관하며,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함
12	안 제15조(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13	안 제16조(회의의 운영)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4	안 제17조(중재제정의 확정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제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제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예산과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 (안 제7조제2항) 제정안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경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심의 단위와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 참고로, 2025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총 6개의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이행점검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있으며, 이들 6개 분과위원회는 2025년에 32회 개최되었음

[표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단위: 개최 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09	1	—	1	108	107	1
2023년	21	2	1	1	19	17	2
2024년	110	1	—	1	109	108	1
2025년	32	—	—	—	32	32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 2025.12

[표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3,355	3,355	—	—	3,142	3,142	—	—
2023년	3,291	3,291	—	—	3,157	3,157	—	—
2024년	3,530	3,530	—	—	3,436	3,436	—	—
2025년	3,905	3,905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 2025.12

□ (안 제15조 및 제16조)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 발생 건수 및 규모와 이로 인한 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
 - － 참고로, 2025년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총 7개의 분과위원회(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이들 7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년에 2,342회 개최되었음

[표 3] 중앙노동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단위: 개최 횟수)

구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980	1	—	1	1,979	1,979	—
2023년	2,195	—	—	—	2,195	2,195	—
2024년	2,519	1	—	1	2,518	2,518	—
2025년	2,342	—	—	—	2,342	2,342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 2025.12

[표 4] 중앙노동위원회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처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처경비	사업경비
2022년	44,341	5,091	30,029	9,221	42,654	5,090	29,334	8,230
2023년	44,881	5,530	30,843	8,508	45,090	5,884	30,453	8,753
2024년	46,693	6,256	32,007	8,430	47,762	6,648	32,414	8,700
2025년	53,974	6,256	33,156	14,562	—	—	—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 2025.12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제정안은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481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